

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제남 의원 대표발의)

용 인 시 의 회

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22 - 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4.

발 의 자 : 이제남 의원

구 분 : 일부개정

개정이유

-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규정 정비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 발췌서

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안전의 심의·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예방과 관련한 관계 전문가 또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**실내건축**”을 “**실내건축,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도시건설위원회	이제남 의원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생략) <신 설></p>	<p>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안건의 심의·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과 관련한 관계 전문가 또는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
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시계획, 시각·공간·제품 디자인, 조경, 건축, <u>실내건축</u>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실내건축,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